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4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엄셋별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2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9월 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래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존·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금천구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, 미래유산 보존·활용 원칙(안 제1조~안 제3조).
-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.
- 3)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(안 제5조~안 제6조).
- 4)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회의 운영 등(안 제7조~안 제11조).
- 5)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(안 제12조~안 제13조).
- 6) 미래유산의 선정 및 연구·조사, 취소(안 제14조~안 제16조)
- 7) 운영의 위탁(안 제17조).
- 8) 기록 및 홍보, 지원 등(안 제18조 ~ 안 제20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○ 본 제정안은 미래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금천구 문화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2) 주요 내용

가) 목적 및 정의, 미래유산 보존·활용 원칙(안 제1조~안 제3조).

- “금천구 미래유산“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·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금천구청장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함

나)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.

- 구청장의 책무로서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·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,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규정함

다)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(안 제5조~안 제6조).

-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

라)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회의 운영 등(안 제7조~안 제11조).
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마)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(안 제12조~안 제13조).

바) 미래유산의 선정 및 연구·조사, 취소(안 제14조~안 제16조)

- 미래유산을 선정하고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함
- 금천구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함

사) 운영의 위탁(안 제17조).

아) 기록 및 홍보, 지원 등(안 제18조 ~ 안 제20조).

3) 검토 의견

- 금천구민의 삶의 역사를 간직한 유·무형의 근현대 문화유산은 미래 세대에 전승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, 급속한 사회변화와 무관심 속에 멸실·훼손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음. 따라서,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금천구의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그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판단됨.
- 본 조례안은 금천구의 근현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총 4개의 장, 20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, 금천구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, 미래유산의 선정과 취소, 미래유산의 관리·운영, 행·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본 제정안은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의 취지에 충실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며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